

검 토 보 고

1997. 7. 16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1997년 7월 3일 제출
- 회 부 : 1997년 7월 3일

3. 제안이유

- 전국과학전람회규칙 (총리령 제581호) 에 준거하여 충청북도 과학 전람회를 개최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함

4. 주요골자

- 조례 폐지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과학전람회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,
- 사실상 총리령인 전국과학전람회규칙에 준거하여 충청북도 과학전람회를 개최하고 있어 업무의 간소화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- 충청북도 과학전람회 조례상의 지역특성에 따른 조항 등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表意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